

2022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컨설팅사업자 운영 및 등록 안내

해당 사업은 해외인증 취득에 드는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해외 인증서 취득을 전제로 정산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
- 컨설팅사 또는 제 3자가 지원업체를 대신하여 대리신청 하는 경우
- 컨설팅사가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허위제안을 한 경우
- 컨설팅사가 지원업체에게 사업 참여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
- 컨설팅사가 지원업체의 확인 도장 위조를 하는 경우

상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적발 되는 경우 aT는 사업비 환수,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I. 추진 목적

「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」에 참여(예정)하는 컨설팅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컨설팅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, 수출업체 등에게 관련 정보 제공

II. 운영 개요

□ 운영기준

-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인증·등록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사업자는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사업에 참여하여야 함
- 컨설팅 사업자는 등록 자격요건을 충족하고, 참여기간 동안 등록기준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
- 컨설팅사업자·컨설턴트는 운영기준,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함
- 지원사업 컨설팅은 등록된 컨설턴트가 수행하여야 하며, 컨설팅사업자는 컨설팅결과보고서[붙임6]를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함
- 등록제외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즉시 aT에 통보하여야 하며, 등록취소 및 지원사업 컨설팅비용 정산 시 제외될 수 있음

- 등록 시 제출한 컨설팅사업자의 현황(일반현황, 컨설팅분야, 컨설턴트 현황)은 aT 홈페이지,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수출업체 등에게 제공되며,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 변경 통보하여야 함

* 주요 변경사항 : 컨설팅분야, 컨설턴트 현황, 연락처

- 민원 발생 또는 운영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 시 점검·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III. 등록 신청

1. 등록대상 :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에 참여(예정)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인증·등록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팅사업자

*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에 대한 식품안전·품질, 법적기준 및 인증 기준,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(단순 분석의뢰, 공증 대행, 번역 등은 미해당)

2. 등록기간 : 2년

* 최초 등록 후 2년 경과 시, 자격요건 재심사 후 등록

3. 등록기준

자격요건

-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인증제도 관련 최근 2년 내 10건 이상 해외인증·등록 컨설팅 수행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, 자격을 갖춘 상근 컨설턴트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함

* 지원사업 대상인증제도 관련 2020.1.1 ~ 2021.12.31에 수행한 컨설팅 실적 기준

** 단,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설립일이 2년 이내의 사업자는 5건 이상 관련 실적 보유

*** 실적은 인증·등록 완료 건만 인정(진행 중인 건 불인정)

**** 컨설턴트 자격기준 : 최근 2년 내 5건 이상 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보유

4. 등록 제외 : 등록 제외 대상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등록 제외대상

-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사업자
-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업자
- 컨설팅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기업, 지자체,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 또는 제재 이력(진행중)이 있는 사업자
- 휴·폐업중인 사업자

등록 제한사유

- 등록 관련 서류를 위·변조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등록 관련 증빙 제출 또는 추가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민원발생, 운영기준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한 점검·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- 등록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농식품 해외인증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
- 지원사업 정산 시 컨설팅내역 등의 컨설팅결과보고서 또는 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
- 기업의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허위 제안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

5. 등록 선정방법

대상업체 적합성 서류검사

- 등록기준 자격요건 충족여부
- 등록 제외대상 미해당 여부
- 필수 구비서류 적정여부
-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

6. 등록방법

모집기간 : 2022.2.14.~ 2022.2.25.

신청방법 :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(원본)으로 제출

* 신청서류 원본은 책자 제본하여 제출 필수(A4 크기)

결과발표 : 2021.3.4.(금)

등록 필수 구비서류

-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[붙임4] 원본 (컨설턴트별 각 1부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붙임5] 원본
- 유의사항 인지조서[붙임8] 원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
- 국세·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
-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 사본
- 컨설팅 실적 및 컨설턴트 현황 관련 증빙자료 [붙임1,2,3]

구분	증빙자료
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아래에서 택일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컨설팅계약서, 인증서 또는 등록증빙자료 (계약서와 인증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)- 컨설팅 실적확인서[붙임7] 및 인증서
컨설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최근 2년 내 5건 이상 해외인증·등록 컨설팅 수행증빙 (컨설턴트 성명이 표기된 컨설팅계약서, 컨설팅 실적확인서 및 인증서 등)

7. 등록 추진절차



V. 제출처 및 문의

- 우편제출처 :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업육성부
해외인증사업 담당자 앞 / 제출 이메일 : atcerti@at.or.kr
- 등록 및 운영기준 문의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업육성부 (061-931-0864)